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연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68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발 의 자 : 김용연 의원 (1명)
찬 성 자 : 김혜련, 이광성, 이호대,
김소영, 정재웅, 권순선,
장인홍, 봉양순, 김제리,
조상호, 김화숙, 장상기,
이병도 의원 (13명)

1. 제안이유

-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량 있는 건축사의 설계 범위가 광범위하여 공모전 입상 실적 건축물의 용도와 전혀 다른 건축물을 설계하였을 때에도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입상 실적에 따른 설계 역량이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를 신청한 해당 건축물에 전혀 발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공사감리자로 지정되고 있음.
- 따라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설계역량이 실제 설계에 발휘될 수 있도록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, 제출된 입상 실적의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「건축법」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,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입상 실적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, 용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.(안 제18조의 3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규칙」,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,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로 하고,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3(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확인 등) 허가권자는 「건축법」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,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입상 실적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용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18조의3(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확인 등) 허가권자는 「건축법」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,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입상 실적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용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.</p>
제18조의3(생략)	제18조의4(현행 제18조의3과 같음)
제18조의4(생략)	제18조의5(현행 제18조의4와 같음)